

# [16] 지방세지출보고서(2024년도 실적기준)

## 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### 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구 분		'24년(결산)
비과세·감면액(A)		118,766,460,810
	비과세	100,963,192,750
	감면	17,803,268,060
지방세 징수액(B)		894,224,372,056
비과세·감면율(A/A+B)		11.7

### 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24년(결산)	비중
총 계		118,766,460,810	100
1	일반공공행정	46,714,695,780	39.3
2	공공질서 및 안전	871,126,510	0.7
3	교육	11,418,805,860	9.6
4	문화 및 관광	2,815,389,180	2.4
5	환경보호	12,197,380	0.0
6	사회복지	4,774,827,270	4.0
7	보건	719,311,690	0.6
8	농림해양수산	455,982,550	0.4
9	산업·중소기업	2,205,833,640	1.9
10	교통 및 물류	76,478,020	0.1
11	국토 및 지역개발	1,620,215,200	1.4
12	과학기술	512,505,000	0.4
13	국가	45,956,024,550	38.7
14	외국	2,459,160	0.0
15	기타	610,609,020	0.5

### 3. 세목별 비과세 · 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24년(결산)	비중
총 계		118,766,460,810	100
보통세		116,900,421,080	98.4
	주민세	322,357,730	0.3
	재산세	111,243,657,000	93.7
	자동차세	5,334,406,350	4.5
목적세		1,866,039,730	1.6
	지역자원시설세	1,866,039,730	1.6

### 4. 비과세 ·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감 면 유 형	'23년(결산)	'24년(결산)	증감액
정당에 대한 비과세	2,279,190	2,065,170	-214,02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43,777,059,670	43,352,859,710	-424,199,960
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180,617,380	227,435,380	46,818,000
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	81,893,120	77,640,470	-4,252,650
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	2,468,588,100	2,707,948,420	239,360,320
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	294,254,210	346,746,630	52,492,420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	1,282,130	1,269,470	-12,660
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	1,077,686,380	869,857,040	-207,829,340
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	19,799,690	1,631,670	-18,168,020
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	7,907,052,200	7,714,096,920	-192,955,280
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50,220	123,480	73,260
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	3,877,728,140	3,575,341,460	-302,386,680
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	549,180,940	127,612,330	-421,568,610
종교단체·향교에 대한 감면	2,843,225,850	2,781,687,390	-61,538,460

신문·통신사업에 대한 감면	17,286,830	16,092,120	-1,194,710
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	5,847,460	5,685,170	-162,290
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	13,437,950	11,924,500	-1,513,450
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	1,349,950	1,349,610	-340
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	9,543,360	9,587,530	44,170
해양환경공단에 대한 감면	1,147,600	1,096,910	-50,690
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	64,649,820	163,330	-64,486,490
장애인에 대한 감면	1,893,911,080	1,805,260,650	-88,650,430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	210,712,820	189,435,400	-21,277,420
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	40,263,210	29,490,020	-10,773,190
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	2,629,880	2,568,390	-61,490
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	37,950,540	37,364,600	-585,940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	511,965,760	491,409,950	-20,555,810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	1,739,920,070	1,752,497,380	12,577,310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	80,075,790	74,874,530	-5,201,260
사회복지법인·시설·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과세	378,940,580	381,331,290	2,390,710
권익증진을 위한 감면	12,375,380	10,595,060	-1,780,320
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	199,000,860	200,436,790	1,435,930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	463,316,920	513,664,610	50,347,690
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	7,024,470	5,210,290	-1,814,180
농업인에 대한 감면	4,034,930	6,404,650	2,369,720
한국농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	13,212,230	11,966,630	-1,245,600
농업법인에 대한 감면	17,941,630	30,067,370	12,125,740
산림유전자원보호법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	1,292,090	1,345,940	53,850
어업인에 대한 감면	37,540,320	37,518,100	-22,220

어업법인에 대한 감면	752,730	1,163,790	411,060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345,832,500	360,746,480	14,913,980
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5,103,860	6,769,590	1,665,730
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	206,180	0	-206,180
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	192,389,710	102,589,320	-89,800,390
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	168,759,340	156,320,040	-12,439,300
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	140,727,440	104,356,870	-36,370,570
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	71,256,130	106,428,860	35,172,730
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	1,470,211,400	1,736,138,550	265,927,150
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	75,720,610	75,585,880	-134,730
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	1,354,140	892,140	-462,000
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	4,458,860	4,403,930	-54,930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	1,209,011,000	1,306,365,850	97,354,850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	309,592,370	309,445,420	-146,950
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	0	512,505,000	512,505,000
국가에 대한 비과세	46,534,197,880	45,932,437,650	-601,760,230
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79,092,400	23,586,900	-55,505,500
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	1,566,970	2,354,240	787,270
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	104,920	104,920	0
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·감면	248,877,150	248,784,050	-93,100
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	70,774,230	45,622,590	-25,151,640
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	392,940	374,290	-18,650
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	3,655,510	3,454,960	-200,550
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	60,037,990	61,899,250	1,861,260
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	1,114,860	1,043,830	-71,030
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	229,946,400	249,430,050	19,483,650

## II. 지방세 비과세 ·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### 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일반공공행정</b>		<b>합 계</b>	<b>46,714,695,780</b>
1	<b>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</b>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, 경비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·2호)	소 계	43,352,859,710
		주 민 세	10,730,000
		재 산 세	42,637,061,750
		자 동 차 세	13,552,550
		지역자원시설세	691,515,410
		-	
2	<b>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b>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·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227,435,380
		재 산 세	226,964,560
		지역자원시설세	470,820
		-	
3	<b>정당에 대한 감면</b> -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①·②·③)	소 계	2,065,170
		주 민 세	50,000
		재 산 세	1,905,610
		지역자원시설세	109,560
		-	
4	<b>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·면제(지방세법 §26② 4호,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소 계	77,640,470
		주 민 세	2,200,000
		재 산 세	74,878,800
		지역자원시설세	561,670
		-	
5	<b>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</b>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)	소 계	2,707,948,420
		재 산 세	2,707,948,420
		-	
6	<b>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</b>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	소 계	346,746,630
		재 산 세	346,746,630
		-	

## 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공공질서 및 안전</b>		<b>합 계</b>	<b>871,126,510</b>
7	<b>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 특례제한법 §85①)	소 계	1,269,470
		재 산 세	1,269,470
8	<b>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·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·③) -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 주민세·자동차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④·⑤) -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(지방세법 §9⑦) - (경북)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- (양산)상업용·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양산)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- (남원)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조례)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- (조례)천재지변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- (조례)태풍·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감면 - (취득세 100%)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	소 계	869,857,040
		주 민 세	25,000
		재 산 세	846,140
		자 동 차 세	868,966,590
		지역자원시설세	19,310
		-	

## 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교 육</b>		<b>합 계</b>	<b>11,418,805,860</b>
9	<b>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</b>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	소 계	7,714,096,920
		주 민 세	80,926,500
		재 산 세	7,384,122,790
		지역자원시설세	249,047,63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10	<p>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p> <p>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</p>	소 계	123,480
		재산세	123,480
		-	-
11	<p>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</p> <p>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</p> <p>-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취득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)</p> <p>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(폐지)</p> <p>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</p> <p>-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5년간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⑧)</p>	소 계	3,575,341,460
		주민세	40,544,750
		재산세	3,384,092,360
		지역자원시설세	150,704,350
		-	-
12	<p>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</p> <p>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③, §44①)</p> <p>-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·등록면허·주민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②)</p> <p>-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③)</p> <p>-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,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④)</p>	소 계	1,631,670
		재산세	1,631,670
		-	-
13	<p>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</p> <p>-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</p> <p>-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·재산세 면제,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8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</p>	소 계	127,612,330
		재산세	127,612,330
		-	-

#### 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문화 및 관광</b>		<b>합 계</b>	<b>2,815,389,180</b>
14	<b>종교단체·향교에 대한 감면</b> -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 - 민법 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5%(감염병전문병원 25%), 재산세 25%(감염병전문병원 35%),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	소 계	2,781,687,390
		주 민 세	53,278,250
		재 산 세	2,532,323,880
		지역자원시설세	196,085,260
		-	-
15	<b>신문·통신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신문·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1)	소 계	16,092,120
		주 민 세	16,092,120
16	<b>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조의2)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 - (제주)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- 문화예술 공공기관, 체육진흥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의2)	소 계	5,685,170
		재 산 세	5,685,170
		-	-
17	<b>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,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 - (조례)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- (서울 성북)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- (조례)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- (조례)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	소 계	11,924,500
		재 산 세	11,924,500
		-	-
		-	-

## 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환경보호</b>		합 계	<b>12,197,380</b>
18	<b>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)	소 계	<b>1,349,610</b>
		재 산 세	1,349,610
		-	
19	<b>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</b> -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8) -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(서울 서초)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- (조례)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	소 계	<b>9,587,530</b>
		재 산 세	9,587,530
		-	
20	<b>해양환경공단에 대한 감면</b> -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9)	소 계	<b>1,096,910</b>
		재 산 세	1,096,910
		-	
21	<b>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</b> -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,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3~1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①)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~2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②)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③) -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50% 재산세 50%(5년간) 감면,대수선의 경우 취득·재산세(5년간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(폐지) -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~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③)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%(설치의무가 없는자에 한함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5) - (제주)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 20%,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 15%, 3등급 이상인 경우 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4④)	소 계	<b>163,330</b>
		재 산 세	163,330
		-	

## 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사회복지</b>		<b>합 계</b>	<b>4,774,827,270</b>
22	<b>장애인에 대한 감면</b>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(조례)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	소 계	1,805,260,650
		자 동 차 세	1,805,260,650
		-	
23	<b>사회복지법인·시설·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</b> -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·재산세 50% 감면,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조례추가50%,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④) - (부산 금정구·광주 남구) 사회복지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%(법령 25%+조례 50%), 재산세 100%(법령 50%+조례 50%) -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면제, 사회복지법인등(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)에 대한 주민세 면제, §22⑤, §22⑥, §22⑦)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 (감염병전문병원 60%)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⑧) -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- (제주)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- (지방소득세 50% 천안)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- (경기)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%	소 계	381,331,290
		주 민 세	50,703,710
		재 산 세	298,671,140
		지역자원시설세	31,956,440
		-	
		-	
24	<b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,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140만원 한도)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 ①, §22의2②) - (제주)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(제주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출산가구 주택취득의 경우 취득세 100% 감면(500만원 한도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5) - (경북) 다자녀가구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100% - (강원) 18세 미만 3명이상 자녀 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50%	소 계	189,435,400
		재 산 세	189,435,40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25	<b>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</b> -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	소 계	<b>29,490,020</b>
		재 산 세	29,223,170
		지역자원시설세	266,850
		-	
26	<b>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스카우트 주관단체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소년단연맹, 정부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①) 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②)	소 계	<b>2,568,390</b>
		재 산 세	2,568,390
		-	
27	<b>권익증진을 위한 감면</b>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1호)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3호) - 법률구조법인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3①,②)	소 계	<b>10,595,060</b>
		재 산 세	10,595,060
		-	
28	<b>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</b> -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①2) -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②2)	소 계	<b>37,364,600</b>
		재 산 세	37,364,600
		-	
29	<b>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·자동차세 면제,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승용자동차 취득·자동차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④)	소 계	<b>491,409,950</b>
		주 민 세	100,000
		재 산 세	25,535,620
		자 동 차 세	462,866,140
		지역자원시설세	2,908,19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30	<b>임대주택에 대한 감면</b>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60~85㎡(20호 이상) 50% 감면, 매입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20호 이상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②)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%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⑥)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(폐지) -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5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4)	소 계	1,752,497,380
		재 산 세	1,752,497,380
		-	-
31	<b>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</b> - 대상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% 감면(225만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(폐지)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공시가격 6억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	소 계	74,874,530
		재 산 세	74,874,530
		-	-

## 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보건</b>		<b>합 계</b>	<b>719,311,690</b>
32	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-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국립대학병원, 국립암센터, 국립중앙의료원,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7)	소 계	200,436,790
		재 산 세	200,436,790
		-	
33	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 -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·재산세 75%(감염병전문병원 85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의2) - (경기 포천)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	소 계	513,664,610
		재 산 세	513,664,610
		-	
34	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- 인구보건복지협회·한국건강관리협회·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)	소 계	5,210,290
		재 산 세	5,210,290
		-	

## 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농림해양수산</b>		<b>합 계</b>	<b>455,982,550</b>
35	농업인에 대한 감면 - 자경농민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①, ②) -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③)(폐지) -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④) - 농기계류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	소 계	6,404,650
		주 민 세	1,198,250
		재 산 세	5,206,400
		-	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한국농어촌공사 제외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</li> <li>- 농어업인이 영농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</li> <li>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세특례제한법 §106의2① 1호)</li> <li>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</li> <li>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</li> <li>- (제주)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제주)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</li> <li>- (제주)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감면</li> </ul>		
36	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	소 계	11,966,63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</li> </ul>	재 산 세	11,966,63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%, ·재산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2호)</li> <li>-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 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3호)</li> <li>-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환매취득 면제)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</li> <li>-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</li> <li>- 제3차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</li> <li>-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</li> <li>-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</li> <li>-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</li> </ul>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37	<b>농업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①) -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②) -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④)(폐지)	소 계	30,067,370
		재 산 세	30,067,370
		-	
38	<b>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</b>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2호)	소 계	1,345,940
		재 산 세	1,345,940
		-	
39	<b>어업인에 대한 감면</b>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,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 -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사업소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세특례제한법 §106의2① 1호)	소 계	37,518,100
		재 산 세	32,006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,512,100
		-	
40	<b>어법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어법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법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(폐지)	소 계	1,163,790
		재 산 세	1,163,790
		-	
41	<b>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, §14④) -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구매·판매·보관·가공·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의3)	소 계	360,746,480
		재 산 세	360,746,48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42	<b>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5①) -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100% 감면(조례로 조정가능)(지방세특례제한법 §15②)(폐지)	소 계	6,769,590
		재 산 세	6,769,590
		-	
43	<b>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</b>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280만원 공제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	소 계	0
		재 산 세	0
		-	

## 9. 산업·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산업·중소기업</b>		합 계	2,205,833,640
44	<b>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%,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①) - '26.12.31.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4년이내(청년창업벤처기업 5년 이내)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%,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)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③)(폐지) -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호)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의2호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(폐지) - (제주구미) 벤처기업의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50%(법령 35%+조례 15%)	소 계	102,589,320
		재 산 세	102,589,32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45	<b>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중견기업,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①·②) -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6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③) -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%, 재산세 50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%, 재산세 6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④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호) - (광주, 광주북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 - (김해)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0% 감면(도시지역분 포함)	소 계	156,320,040
		재 산 세	156,320,040
		-	
46	<b>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 외 지역 재산세 6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취득·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) -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하고 3년간 재산세 50% 감면(수도권 외 지역 6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%, 재산세 35%(+ 조례 1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,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%, 재산세 3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①) -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% 감면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②) -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, 재산세(5년간)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5의3) - (인천·광주·강원·전남)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	소 계	106,428,860
		재 산 세	106,428,86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서울·경기)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제주)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</li> <li>- (강원·경북 문경)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%, 3년간 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대구·경북)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제주·경기평택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북·경남) 고용창출기업(고용우수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% 감면</li> </ul>		
47	<b>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 50~100%, 재산세 50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의3)</li> <li>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</li> </ul>	소 계	<b>104,356,870</b>
		재 산 세	104,356,870
		-	
48	<b>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</li> <li>-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</li> <li>-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, 중고기계장비,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,000분의 20을 감면,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③)</li> </ul>	소 계	<b>1,736,138,550</b>
		자 동 차 세	1,736,138,550
		-	

## 10. 교통 및 물류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b>수송 및 교통</b>	합 계	<b>76,478,020</b>
49	<b>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</li> </ul>	소 계	<b>75,585,880</b>
		재 산 세	75,585,8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,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</li> <li>-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</li> <li>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재산세 100%감면(조례로 조정가능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⑤)</li> <li>-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⑥)</li> </ul>	-	
50	<b>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</b>	소 계	<b>892,140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~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(2007.12.31.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 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</li> <li>- 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)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</li> </ul>	자 동 차 세	892,140
		-	

## 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국토 및 지역개발</b>		합 계	<b>1,620,215,200</b>
51	<b>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</b>	소 계	<b>4,403,930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②)</li> <li>- (대구 달성군, 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경기 평택시·여주군·동두천시)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)</li> </ul>	재 산 세	4,403,930
		-	
52	<b>산업단지에 대한 감면</b>	소 계	<b>1,306,365,850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</li> </ul>	재 산 세	1,306,365,85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</li> <li>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</li> <li>- 산업단지, 유지지역,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75%), 대수선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④)</li> <li>-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·임대 및 매각 사업, 후생복지·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%, 재산세 50% 감면(수도권외 7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⑥)(폐지)</li> <li>-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⑨)</li> <li>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</li> <li>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 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</li> <li>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li> <li>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li> <li>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% 감면</li> <li>- (광역공통 수도권외)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·증축 부동산(법50%+ 조례25%)</li> <li>- (전주)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, 임대 목적 부동산</li> <li>- (세종) 세종스마트국가산단·세종복합일반산단 사업시행자 관련 부동산 재산세 공제</li> </ul>	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53	<b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</b> 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①) 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 -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③)	소 계	309,445,420
		재 산 세	309,445,420
		-	-

## 12. 과학기술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과학기술</b>		합 계	512,505,000
54	<b>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박물관 또는 미술관,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의2) - 5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) -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의2)	소 계	512,505,000
		재 산 세	512,505,000
		-	-

## 13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국 가</b>		합 계	45,956,024,550
55	<b>국가에 대한 비과세</b>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과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소 계	45,932,437,650
		주 민 세	11,788,750
		재 산 세	45,284,956,960
		자 동 차 세	111,214,810
		지역자원시설세	524,477,13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56	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23,586,900
		재 산 세	19,797,050
		지역자원시설세	3,789,850
		-	

## 14. 외국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외 국</b>		합 계	2,459,160
57	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90, §109①, §145②) 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	소 계	2,354,240
		자 동 차 세	2,354,240
		-	
		-	
58	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-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·자동차·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① 2호, §90, §126 3호)	소 계	104,920
		자 동 차 세	104,920
		-	

## 15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기 타</b>		합 계	610,609,020
59	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45②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, §145②)	소 계	45,622,590
		재 산 세	37,382,080
		지역자원시설세	8,240,51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60	<b>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,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	소 계	248,784,050
		자 동 차 세	248,784,050
		-	-
61	<b>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</b>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	소 계	374,290
		지역자원시설세	374,290
62	<b>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①) -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)	소 계	3,454,960
		주 민 세	350,000
		재 산 세	3,104,960
63	<b>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</b> - 신탁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1호, §87②1호) - 신탁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,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,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	소 계	61,899,250
		재 산 세	61,899,250
		-	-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64	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 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)	소 계	<b>1,043,830</b>
		재 산 세	1,043,830
		-	
65	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-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 제한법 §92의2)	소 계	<b>249,430,050</b>
		주 민 세	54,370,400
		재 산 세	110,787,580
		자 동 차 세	84,271,710
		지역자원시설세	360